

2016년도

청소년분특별지원사업 운영(안)



목 포 시
(여성가족과)

2016년도 「청소년특별지원사업」 추진계획

1

사업개요

1. 사업목적

-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사회적·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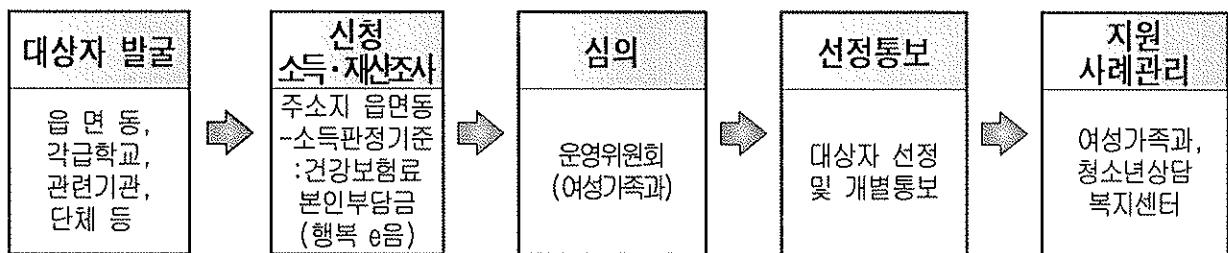
2. 추진방향

-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·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'특별지원청소년'으로 규정
- 다른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

3. 사업내용

- 사업기간: 2016. 2월~12월
- 신청기간: 2016년 3월 2일(수) ~ 3월 10일(목)
- 사업대상 : 만 9세 이상 부터 만 18세 이하의 위기청소년
 - 비행 일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 -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
 -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- 예산액 : 10,000천원(국비 7,000, 도비 1,500, 시비 1,500)
- 지원내용 :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, 건강, 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, 청소년 활동 및 기타
- 추진근거 :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(위기청소년특별지원),
제15조(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)

- 추진절차



- 사업주관 : 목포시(여성가족과)

2 |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

- 신청기간 : 2016. 2. 15.(월) ~ 3. 9.(수)

- 지원대상

가. 나이기준 : 만 9세이상 만 18세이하 청소년(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)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

예) 1991. 8. 1일 생일 경우 2016. 7월까지 지원

나. 선정기준
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-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-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※ 이 경우에만 생활, 건강지원 가능

다.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

- 생활, 건강지원 : 중위소득 60% 이하
- 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, 기타지원 : 중위소득 72%이하

라. 특별지원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

- 가출, 범죄, 비행,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
입증은 현지조사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의 초기상담으로 확인조사

- 신청자 :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, 교사, 청소년상담사, 사회복지사 등

- 신청장소 : 동주민센터

○ 제출서류

-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(신청인이 작성)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
- 청소년이 속한 가구(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정)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

○ 처리기한 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
3 특별지원 지원내용

○ 지원종류 및 내용

지원 종류	지원 내용	구체적 내용	지원 금액	지원 방법
생활 지원	청소년이 일상적인 의·식·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	가. 의복·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. 숙식 제공	월 50만원 이내	매월 1회
건강 지원	청소년이 신체적·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	가. 진찰·검사 나.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 다. 처치·수술, 그 밖의 치료 라. 예방·재활 마. 입원, 바. 간호 사.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* 비급여는 원칙으로는 제외되나 시·군·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* 본인부담액 지원	연 200만원 (220만원 한도)	1년 또는 매월
학업 지원	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, 견학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	가.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* 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 나. 교과서대 다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1호·제9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중·고등학교 입학 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	월 15만원 (수업료) 월 30만원 이내 (검정고시)	월1회, 분기별, 1년 등
자립 지원	취업을 위한 지식·기술·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	가. 지식·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. 진로상담 비용(직성·흥미 검사 및 상담·비용 포함) 다. 직업체험 비용 다.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	월 36만원 이내	월1회, 분기별, 1년 등
상담 지원	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·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	가. 정신적·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. 상담관련 프로그램 * 집단상담,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.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	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(년 25만원) 별도	월1회, 분기별, 1년 등

지원 종류	지원 내용	구체적 내용	지원 금액	지원 방법
법률 지원	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	가. 소송비용 나. 법률상담비용	연 350만원 이내	1회 지원
활동 지원	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	가. 수련활동비 나. 문화활동비 다. 특기활동비 라. 교류활동비 등	월 10만원 이내	월1회, 분기별, 1년 등
기타 지원	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	가.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등의 교정 나. 청소년이 교복지원, 수학여행비지원등	(위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)	월1회, 분기별, 1년 등 (청소년 당 2종이상 지원가능)

○ 중복지원 금지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
 ※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,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

○ 지원기간 : 2016. 1월 ~ 2016년 12월까지

※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지원 할 수 있음.

○ 지원방식

-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·시설에 직접 입금
-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은 해당 보호시설에서 관리

○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청소년복지지원법제10조, 동법시행령제5조에 의거
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

- 역할 : 대상자 선정, 변경, 연장 등 결정, 기타 제반사항 논의

- 긴급지원의 원칙

- 운영위원회 결정 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니,
-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가능(※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첨부)

- 특별지원대상자 사후관리

- 선정통보 :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, 신청인에게 서면통보
- 특별지원관리카드 작성(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42조 서식)
-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례관리 의뢰
- 만족도 조사 : 대상청소년에 대한 지원 종결시 만족도 조사
-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이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, 해당자료를 송부하여 지속지원

- 읍면동 협조사항

- 관할지역내에 대상자 발굴 및 특별지원 사업 홍보
- 대상자 발견시 신청서 접수및 송부
- 사회복지통합관리망(행복 e음) 연계 이중지원여부 등 확인

붙임 1.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1부.

2.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1부.

3.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각 1부. 끝.

【서식 제1호】

특별지원 사전 검토서

*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시 작성

수신처 : ()시 · 군 · 구청장 귀하

소속기관/발굴자			연락처		
대상 청소년	이름			생년월일	
	주소			연락처	
위기 유형 해당 항목 모두 표시 ✓	1. 보호자 유무 및 보호, 위기상황 1-1. 보호자 유무 및 보호여부 ① 보호자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보호자 보호)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호자 실질적 비보호) ② 보호자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(보호자 비보호)				
	1-2. 위기상황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출청소년 <input type="checkbox"/> 빈곤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정폭력(아동학대) <input type="checkbox"/> (부모)정신과적 문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조손 한부모가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구체적으로:)				
	2. 타 법과 제도에 따른 지원여부(기구에 대한 지원 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초생활수급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구체적으로:)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※ 중복지원의 경우 동일 유형의 지원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				
	3. 학업중단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학생(학교/학년:)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 밖 청소년 ※ 학교 밖 청소년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초중학교 등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쥐학 의무 유예, 고등학교 등을 제적·퇴적·자퇴하거나 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				
	4.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 필요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소년법」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(1~10호)을 받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<input type="checkbox"/>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가해학생, 피해학생, 장애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청소년폭력 학대 피해청소년 <input type="checkbox"/>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또는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구체적으로:)				
	지 유 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생활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업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립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상담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법률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년활동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밖의 지원(구체적으로:)			
	종 소 합 견	<input type="checkbox"/> 긴급지원 대상으로 판단됨 /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지원 대상으로 판단됨 소견:			

위 대상 청소년에 대한 위기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발굴자 (인)

【서식 제2호】

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

※ 운영위원회 미 개최시 반드시 사유서 첨부

대상 청소년	이름		주민등록 번호	
	주소		연락처	
신청자 상태	가출, 자살시도, 음주, 흡연, 가정붕괴, 폭력, 학업중단, 기타			
요구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생활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업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립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상담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법률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년활동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밖의 지원			
긴급정도	긴급 정도 '5단계 척도'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우 긴급 <input type="checkbox"/> 상당히 긴급 <input type="checkbox"/> 긴급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통 <input type="checkbox"/> 여유			
긴급지원 사유				
위와 같이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. 20 년 월 일				
		시 · 군 · 구	담당자 (인)	
		시 · 군 · 구	관리자 (인)	